

송산체육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당진시에서 시행하는 송산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토지정형화를 위하여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손실보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5월 03일

당진시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송산체육공원 조성사업
- 나. 위치 : 충남 당진시 송산면 상거리 307번지
- 다. 시행기간 : 2017. 4. ~ 2018. 12.
- 라. 사업시행자 : 당진시장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가. 토지 : 당진시 송산면 상거리 307번지, 716㎡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함.

3. 보상계획

-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
- 나. 보상방법 : 현금보상(계좌입금)
- 다. 보상금 산정방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이상의 감정평가사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1인)를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진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가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보상절차

- 1)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결정 → 손실보상 협의
① 협의(계약 체결시) → 소유권 이전 → 보상금 지급(계좌입금)
②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 보상금 공탁

4. 열람공고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당진시청 체육육성과(8층)

다. 이의신청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 타

가. 보상장소,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맞춰 안내문을 별도 통지할 계획입니다.

나. 토지조서, 물건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보상이 불필요할 경우(불법 등)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합니다.

다. 본건 편입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지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라. 공사위치 및 보상시기등 기타사항은 **우리시 체육육성과(☎041-350-3862)**에 문의하시고 토지와 물건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열람기간내에 우리시 체육육성과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